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자동차연료·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자동차 연료첨가제·촉매제 법정시험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판정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개선하고,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분석방법 추가 및 촉매제 검사방법 최신화하여 시험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종전의 사후관리 판정방법 및 시료채취 방법을 환경부 사후관리 매뉴얼에 맞춰 신설·개선하여 행정처분 불합리성을 개선함(안 제616조의2, 제17조)

나.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해물질검사 분석방법 추가하고 촉매제 검사방법을 최신화 하여 시험절차 간소화 및 분석오차 최소화함(별표2, 별표3)

다.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 명확화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8조, 제13조)